

보도참고자료

제목: 고용노동부,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

2021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.

붙임 2021년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. 끝.

고용노동부 대변인
(044-202-7779)

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

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도입추진단 (☎ 044-202-7194)

- '21.1.1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.
 -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, 청년,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「취업지원서비스」와 「생계지원」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.
 -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+ 구직촉진수당(50만원×6개월)이 결합 제공하는 I 유형과,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*으로 제공하는 II 유형으로 운영됩니다.
- *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급

< 유형별 지원대상 요건 비교 >

필요요건		연령	소득	재산	취업경험
I 유형	요건 심사형	15~69세	중위소득 50% 이하	3억원 이하	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
	선발형		중위소득 50% 이하 (청년특례: 120%↓)	3억원 이하 (청년특례 별도규정)	X
II 유형			중위소득 100% 이하 (청년은 별도 정함)	X	X

☞ (참고)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(www.국민취업지원제도.com)

<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>

- 추진배경 :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“한국형 실업부조 도입” 추진*
* 국정과제 선정(17.5)→경사노총 합의(18.8,19.3)→「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」 일자리넷 의결(19.6)
- 근거법률 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(20.6.9.제정)
- 주요내용 : 저소득 구직자, 청년,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
- 시 행 일 : 2021년 1월 1일

예술인 고용보험 적용

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(☎ 044-202-7352)

□ '20.12.10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으로 예술인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.

○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<근로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 주요내용>

구분		근로자	예술인
1. 적용범위			
적용대상		근로자(일용근로자 포함)	예술인(단기예술인 포함)
주요 적용제외		주 15시간 미만자 (단, 3개월 이상 근무시 적용) 65세 이후 신규자 등	문화예술용역계약별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자(단, 소득합산 신청으로 50만원 이상시 적용) (좌동)
2. 보험료 징수			
보험료율		실업급여 1.6% 고용안정·직업능력 0.25~0.85%	실업급여 1.6% 고용안정·직업능력 미적용
3. 실업급여 지급			
수급 요건	기여 요건	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	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
	주요 이직 사유	비자발적 이직	비자발적 이직 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인정)
지급수준		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%	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%
지급기간		120~270일	(좌동)
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인정		수급기간 중 취업한 날에 대해 구직급여일액 전부를 감액	수급기간 중 소득 발생시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구직급여 지급
4. 출산전후(휴가)급여 지급			
기여요건		휴가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	출산(유산,사산)일 직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충족
지급수준		휴가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100%	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%
지급기간		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일부 (우선지원:90일, 대규모:30일)	출산일 전후 90일(다태아의 경우 120일)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정보공개>법령정보>최근 제·개정법령

<예술인 고용보험 확대>

- 추진배경 :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 및 예술인의 고용안전망 강화
- 주요내용
 -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수급요건 충족시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지급받을 수 있음
- 시행일 : 2020년 12월 10일

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☎ 044-202-7498)

- '21.1.1. 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,094,000원으로 인상됩니다.
-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(월)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·납부하여야 하는데,*
 - * 정부(공무원부문):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
 - 정부(비공무원부문) 및 민간기업: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
- '20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,078천원이었으나,
'21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,094천원으로 인상·적용합니다.

장애인 고용률	2020년	2021년
고용의무이행률이 3/4이상	월 1,078,000원(부담기초액)	월 1,094,000원(부담기초액)
고용의무이행률이 1/2이상~3/4미만	월 1,142,680원	월 1,159,640원
고용의무이행률이 1/4이상~1/2미만	월 1,293,600원	월 1,312,800원
고용의무이행률이 1/4미만	월 1,509,200원	월 1,531,600원
장애인 미고용	월 1,795,310원(최저임금액)	월 1,822,480원(최저임금액)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정책자료>대상자별 정책>장애인

<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>

- 추진배경 :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강화
- 주요내용
 - 부담기초액 상황
 - 현행 : 1,078,000원~1,795,310원(5단계)
 - 개정 : 1,094,000원~1,822,480원(5단계)
-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

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·납부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☎ 044-202-7498)

- '21.1.1.부터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·납부 하여야 합니다.
 - 그동안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,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부문에 대해서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적용하였지만
 - '20년부터는 공무원 부문에 대해서도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적용됨에 따라,
 - '20년에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여 고용한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 및 교육감은 미달하는 인원 (소수점 이하는 올림)에 부담기초액(월)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'21년 1월 말까지 고용부담금으로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
☞ (참고) [고용노동부 홈페이지](#)>[정책자료](#)>[대상자별 정책](#)>[장애인](#)

<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신고·납부>

- 추진배경 :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강화
- 주요내용
 -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신고·납부
 - 제도 적용: 2020년~(계속)
 - 신고·납부 : 2021년~(계속)
- 시행일 : (부담금 적용) 2020년 1월 1일, (신고·납부) 2021년 1월 1일

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

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(☎ 044-202-7545)

- 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,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(단, 일요일은 제외*)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.

*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

-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,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.
- 한편, 공휴일(대체공휴일 포함)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(휴일대체)할 수 있습니다.
-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(대체공휴일 포함)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*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.

* 1일 8시간 이내는 50% 가산,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% 가산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정책자료 > 정책자료실(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관련 주요내용 및 지원방안, '20.12월)

<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확대>

- 추진배경 :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
- 주요내용
 -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(유급휴일 의무화)
- 시행일
 - '20.1월 : 300인 이상 → '21.1월 : 30~299인 → '22.1월 : 5~29인

「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제출 및 대체자료
기재 심사제도」 시행

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(☎ 044-202-7757)

- 화학물질(제품)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작성시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·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 - * MSDS: 화학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보(제품명,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, 취급 주의사항, 유해성·위험성 등)를 기재한 자료
 - 그간 화학물질을 양도·제공받는 자에게만 제공하던 MSDS를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합니다.
 - * 다만, 연구개발(R&D)용 화학물질 등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
 - 그간 사업주의 자의적 판단으로 MSDS 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비공개해 왔던 것을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(심사기간은 1개월 이내)을 받아 대체자료(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)로 기재해야 합니다.
 - * 심사 신청시에는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(비공지성, 비밀관리성, 경제적 유용성)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, 연구개발용(R&D)용 화학물질은 절차 간소화(심사기간은 2주 이내)
-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적용되며,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'물질안전보건자료' 검색('20.12월)

<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 제도>

- 추진배경 : 화학물질 정보전달 강화
- 주요내용
 -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
 - 현행 : MSDS 미제출(별도 명령시 제출), 영업비밀을 자의적 판단으로 비공개
 - 개정 : MSDS 제출,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을 승인받아 대체자료로 기재
 - 다만, 연구개발용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되, 대체자료 기재시에는 승인 신청
- 시행일 : 2021년 1월 16일

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

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(☎ 044-202-7350)

-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.
 -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(계약당사자)는 고용보험료의 80%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소규모사업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용보험·국민연금 보험료도 계속 지원합니다.
 - '21년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,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 - * 지원대상(월 보수): '20년 215만원 미만 → '21년 220만원 미만
 - 다만, '21년부터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한 근로자(기가입자)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정보공개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

<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>

- 추진배경 : 소규모사업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확대
- 주요내용
 - (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)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, 월보수 220만원 미만 예술인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% 지원
 - (근로자)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, 월 보수 220만원 미만자 지원
 - *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한 근로자(기 가입자) 지원 중단
- 고시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

「일자리 안정자금」 지원 지속

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(☎ 044-202-7783)

□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1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.

○ 2020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였으나,

- 최저임금 인상(1.5%)에 따라 2021년에는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.

-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노동자 1인당 월 7만원, 5인 이상 사업체는 5만원입니다.

*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비례 지원

□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☞ (참고) [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\(www.jobfunds.or.kr\)](http://www.jobfunds.or.kr) > 사업소개 (지원대상·요건 등)

<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>

□ 추진배경: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·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

□ 주요내용

○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5만원 지원(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 추가지원)

* (5인 미만) 월 7만원 지원, (5~30인 미만) 월 5만원 지원,
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원

□ 시행일: 2021년 1월 1일

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☎ 044-202-7484)

-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출·퇴근 비용을 신규 지원합니다.
- 중증장애인 중에서 임금수준이 가장 열악한 '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% 미만자'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.
- * (최저임금적용제외)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(최저임금법 제7조)
- 지원금은 월 5만원으로 교통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, 버스, 택시(장애인콜택시 포함),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2021년 4월 1일부터 사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정책자료>대상자별 정책>장애인

<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실시>

- 추진배경 : 저임금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출퇴근 비용 신규 지원
- 주요내용
 - (지원대상)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중위소득 100% 미만자 대상
 - (지원액) 월 5만원 한도로 교통바우처로 지원
- 시행일 : 2021년 4월 1일 (시범사업 실시)

300인 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 강화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☎ 044-202-7487)

-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주가 외부 교육기관이나 전문강사 위탁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'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'을 실시하는 경우에는
 - 교육의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내강사가 실시하여야 합니다.
 - *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3항('20.6.9 공포, '20.12.10 시행)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의 제3항 ('20.12.10 시행)
 - 개정내용은 **2021년 1월 1일부터** 실시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부터 적용됩니다.
- ☞ (참고) [고용노동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·의결](#)

<300인 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 강화>

- 추진배경 : 사업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품질 제고
- 주요내용
 -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사내 강사가 실시
- 시 행 일 : 2021년 1월 1일

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

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(☎ 044-202-7480)

-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.
 - 기존에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지원금(월 30만원)에 더해 월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.
 - 앞으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각각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.
 - * 육아휴직 2,3호 인센티브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-3호 인센티브 신설
 -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.

☞ (참고) [고용보험홈페이지>사업주지원금 안내>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](#)

<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>

- 추진배경 :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확대를 통한 모성보호제도 활성화
- 주요내용
 -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인센티브 확대 (1호 → 1~3호)
 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지원금 인센티브 신설 (1~3호)
- 시 행 일 : 2021년 1월 1일

직장어린이집 인건비·운영비 지원요건 완화

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(☎ 044-202-7480)

-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·운영비·설치비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경력단절을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.
 - 기존에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중 해당 직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여, 조손가정 등 자녀가 아닌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.
 - 이에, 지원요건 판단 시 피보험자가 보호하고 있는 영유아를 포함하도록 하여 피보험자가 친권자·후견인·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를 지원합니다.
 - 개정 내용은 **2021년 1월 1일부터** 적용됩니다.
-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 「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등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」

<직장어린이집 인건비·운영비 지원요건 완화>

- 추진배경 : 근로자들의 출산·육아로 인한 육아 부담을 덜어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·가정 양립을 지원
- 주요내용
 -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59조의 '피보험자의 자녀'를 「영유아 보육법」 제2조에 따른 보호자인 피보험자의 영유아'로 변경
-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

최저임금액 인상

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(☎ 044-220-7970)

- 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,720원으로 인상됩니다.
 -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9,760원,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,822,480원(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,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)입니다.
 -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,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.
 - 다만,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%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.
 - * (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)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, ②단순노무종사자(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)
-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, 2021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'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'은 15%, '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'는 3%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.
 - * (예시)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, 상여금 272,810원(8,720원×208.57시간×15%), 복리후생비 54,562원(8,720원×208.57시간×3%)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정보공개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

<최저임금액 인상>

- 추진배경 :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1년 최저임금액 인상
- 주요내용
 - 2021년 최저임금액: 시간급 8,720원
 - 2021년 최저임금 산입범위: 월환산액 기준 상여금 15%, 복리후생비 3% 각 초과금액
- 시 행 일 : 2021년 1월 1일

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“자녀양육비” 용자 신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대상 확대

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(☎ 044-202-7561)

- 저소득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용자종목에 “자녀양육비”를 신설합니다.
 -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만 7세 미만의 영·유아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며, 1자녀당 연 500만원 (총 한도 1,000만원) 범위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
- 또한,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용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* (前) 저소득 노동자,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→
(後) 저소득 노동자,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

☞ (참고) 근로복지넷 누리집 (<http://www.workdream.net>)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보도자료 > 남녀고용평등법, 근로복지기본법,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

<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제도 개요 및 변경내용>

□ 근로자생활안정자금용자 제도

- (내용) 저소득 근로자^①에게 의료비, 혼례비 등 생활 필수자금을 저리^②로 용자함으로써 가계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
 - ①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2/3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
(단, 임금채불생계비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인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)
 - ② 연 1.5%
- (용자종목) 의료비, 장례비, 혼례비 등 총 9종

종류	의료·장례비	혼례비	부모요양비	자녀양육비	자녀학자금	임금감소생계비	소액생계비	임금채불생계비
한도	1,000만원	1,250만원	1,000만원 (1부모당 연 500)	1,000만원 (1자녀당 연 500)	1,000만원 (1자녀당 연 500)	1,000만원 한도 내 임금 감소액	200만원	1,000만원 한도 내 채불임금 범위

* 2종류 이상 용자신청 시 2,000만원 한도

□ 주요 변경 내용

- (용자종목 추가) 총 8종 → 9종(『자녀양육비*』 신설)
 - *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500만원 범위 내 용자 지원
- (용자대상 확대)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

□ 시 행 일 : (용자종목 추가) '21.1월 중, (용자대상 확대) '20.12.8 시행

대표이사의 “안전·보건에 관한 계획” 수립 및 이사회 보고·승인

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(☎ 044-202-7507)

-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“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”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의무대상은 「상법」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 회사입니다.
-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, 안전·보건관리 조직의 구성·인원 및 역할, 안전·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, 안전·보건에 관한 활동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- * 안전보건계획이란, 「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를 계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작성하는 계획서」를 말함
-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.
-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공포(19.1.15.)

<대표이사의 안전·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이사회 보고·승인>

- 추진배경 : 기업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산업재해 예방시스템 마련 유도
- 주요내용
 - 회사의 대표이사가 안전·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함
 - 대표이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,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- 시 행 일 : 2021년 1월 1일

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

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(☎ 044-202-7712)

□ '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

○ 현재 보험설계사, 킥서비스기사, 택배기사, 방문판매원,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습니다.

- '21.7월부터는 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새로이 추가됩니다.

○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유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 적용제외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- '21.7월부터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, 이 외에는 모두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.

- ① 종사자의 질병·부상, 임신·출산·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
- ②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
- ③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>정보공개>법령정보>입법예고>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
고용노동부 홈페이지> 보도자료> 남녀고용평등법, 근로복지기본법,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

<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>

- 추진배경 :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
- 주요내용 :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, 육아·질병 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의무적용
- 시행일 : 2021년 7월 1일

「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·위험물질 규정량 조정」 시행

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(☎ 044-202-7754)

- 화재·폭발·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공정 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이 변경되었습니다.
 - 따라서 개정된 규정량*이상으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·취급·저장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·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 - * PSM 규정량 조정(산안법 시행령 별표13 개정):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 위험물질 규정량을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(현행보다 하향 18종, 상향 18종, 현행과 동일 15종)
 - ↳ 또한 부식성 액체(염산, 황산, 암모니아수 등) 농도기준 조정 및 배관을 통해 공급받는 연료용 도시가스의 규정량도 일부 조정
- 개정된 규정량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6일부터,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7월 16일 부터 적용·시행되며
 -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(중대산업사고예방 센터)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.
 -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>정보공개>법령정보>입법예고>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안

<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문의 연락처>

명칭	소재지	연락처	관할지역
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	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230	031-364-7510	서울, 인천, 경기, 강원
경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	울산시 울주군 처용산업단지4길 51	052-228-5840	부산, 울산, 경남
경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	경북 구미시 산동면 송백로 421	054-459-1150	대구, 경북
전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	전남 여수시 중흥2로 10	061-690-1660	광주, 전남, 제주
전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	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78길 287	063-839-5260	전북
충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	충남 서산시 대산읍 명지1로 213	041-661-5841	대전, 세종, 충남
충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	충북 충주시 대림로 85	043-870-5960	충북

<「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·위험물질 규정량 조정」 시행 >

- 추진배경 : 공정안전보고서 대상물질 규정량을 유해·위험성 및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하여 규제 형평성 제고
- 주요내용
 -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(별표 13)을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(현행보다 하향(강화) 18종, 상향(완화) 18종, 현행과 동일 15종)
- 시행일 : 상시근로자 5명 이상 '21.1.16~, 상시근로자 5명 미만 '21.7.16~

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 확대

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(☎ 044-202-7709)

- 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는 신청기간이 장해판정일부터 1년 이내였으나, '21년부터는 장해판정일부터 3년까지 확대됩니다.
 - 직업훈련은 일하다 다쳐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,
 - 기존에는 훈련신청 시점에 따라 훈련수당을 차등지급 하였으나, 이제는 훈련신청 기간이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로 변경되어 훈련수당이 차등없이 지급됩니다.
 -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에 직업훈련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훈련 신청해도 훈련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해 드립니다.
 - * (훈련기간) 산재 직업훈련 지원(수당·비용) 기간은 총 12개월, 훈련 횟수 2회
 -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시행일 이후 산재 장해판정 받은 사람 부터 적용됩니다.
-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>정보공개>법령정보>입법예고>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

<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할 수 있는 기간 확대>

- 추진배경 : 실업중인 산재장해인에 대한 취업안전망 강화
- 주요내용
 -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 언제든지 훈련받아도 최저임금 100% 보장
 - 현행: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1년 이내 (최저임금 100% 수준 내)
산재 장해판정일부터 1년 경과 3년 이내 (최저임금 50% 수준 내)
 - 개정: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 (최저임금 100% 수준 내)
 - * 개정내용 시행일 이후 장해판정 받은 사람부터 적용
- 시 행 일 : 2021년 2월 1일

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

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(☎ 044-202-7204)

① 파견·용역업체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- 기존에 사업주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속 근로자가 여러 타사업체에 분산 근무하는 파견·용역 업체 등은 지원이 어려웠습니다.
- 그러나 파견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
 - 파견업체는 별도로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·용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됐으며,
 - 감원방지 기간(1개월)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.

② 집합금지명령·집합제한명령으로 휴업 시 30일 이내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- 기존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센터나 인터넷(고용보험 사이트)을 통해 신고해야 했습니다.
-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, 집합제한 명령으로 급작스럽게 휴업한 경우에 30일 이내 사후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을 연장했습니다.

③ 지원 사업주 요건이 되는 매출액 비교 시점 변경

-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매출액 등이 전년 동월, 전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% 이상 감소하여야 합니다.

*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주 요건: ① 재고량이 전년 월평균 재고량 대비 50% 증가, ② 생산량이 전년 동월, 전년 월평균, 직전 3개월 생산량 대비 15% 감소, ③ 매출액이 전년 동월, 전년 월평균, 직전 3개월 생산량 대비 15% 감소 등

-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미 '20년 매출액 등의 감소추세가 지속된 사업주들은 '21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자 하여도 전년 대비 매출액 15% 감소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.

- 이에 전년('20년)도 월평균 대비 매출액 15% 이상 감소 등 기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

- '19년 월평균 또는 '19년 같은 달과 비교하여 매출액이 15%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④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기준 변경

- 기존에는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6~4개월 전 3개월 간 월평균 실근로시간의 20%를 초과단축 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.

- 그러나 6개월에서 4개월 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시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, 소규모 기업들의 경우 이를 입증하기 어렵고, 증빙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부담도 있었습니다.

○ 이에 사업주들의 행정부담 완화, 지원금 신속지원을 위하여 **소정근로시간***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.

*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합의한 근로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

- 소정근로시간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 사업주는 소정근로시간 증빙서류로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있는 취업규칙, 단체협약, 근로계약서 등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행정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.

- 다만,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정형화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

○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고용유지지원제도 개선

<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>

- 추진배경 :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및 제도 편의성 제고
- 주요내용
 - 파견·용역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
 - 집합금지·제한명령으로 휴업시 고용유지조치계획 사후신고 기간 연장(30일)
 - 지원 사업주 요건이 되는 매출 비교시점 확대(2019년 매출액 비교 허용)
 - 근로시간 단축 기준으로 실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으로 변경
-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

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

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(☎ 044-202-7204)

□ 10인 미만 기업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허용

- 현재 10인 미만 기업은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대상이 아니나,
 - 22년까지 10인 미만 기업도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을 소진한 경우에는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.

□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

- 또한 현재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받기 위해서는 무급휴직 실시 전(前)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유급휴업(근로시간 20% 초과 단축)을 실시하여야 했으나,
 - 앞으로는 피보험자 20% 이상이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도 무급휴직 지원금 사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무급휴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.
-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고용유지지원제도 개선

<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>

- 추진배경 : 무급휴직 지원금
- 주요내용
 - 10인 미만 기업도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을 소진한 경우에는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
 - 피보험자 20% 이상이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
- 시 행 일 : 2021년 1월 1일

양식 2

「신·구 대비표」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			관계 부서
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설	<input type="checkbox"/> 저소득 구직자, 청년, 경력 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 ☞ (참고) 홈페이지 (www.국민취업지원제도.com)	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('21.1.1) 고용노동부 국민취업 지원제도 도입 추진단 (044-202-7194)
예술인 고용보험 적용	<input type="checkbox"/> 예술인 고용보험 미적용	<input type="checkbox"/>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지급받을 수 있음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 정보공개> 법령 정보> 최근 제·개정법령	고용보험법 ('20.12.10)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기획과 (044-202-7352)
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	<input type="checkbox"/> 부담기초액: 1,078,000원 ○ 고용의무이행률 - 3/4 이상 : 1,078,000원 - 1/2~3/4: 1,142,680원 - 1/4~1/2: 1,293,600원 - 1/4 미만: 1,509,200원 - 미 고 용: 1,795,310원	<input type="checkbox"/> 부담기초액: 1,094,000원 ○ 고용의무이행률 - 3/4 이상 : 1,094,000원 - 1/2~3/4: 1,159,640원 - 1/4~1/2: 1,312,800원 - 1/4 미만: 1,531,600원 - 미 고 용: 1,822,480원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 정책자료> 대상자별 정책> 장애인	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(고용노동부 고시) ('21.1.1.)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044-202-7486)
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신고·납부	<input type="checkbox"/> '20년부터 공무원 부문 장애인고용부담금 적용	<input type="checkbox"/> '21.1월까지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·납부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 정책자료> 대상자별 정책> 장애인	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의2 ('20.1.1)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044-202-7486)

<p>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'20년부터 3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에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로 적용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'21년부터 30인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에도 확대 적용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정책자료(관공서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관련 주요내용 및 지원방안, '20.12월)</p>	<p>근로기준법 ('21.1.1) 고용노동부 임금근로 시간과 (044-202-7545)</p>
<p>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MSDS는 화학물질을 양도·제공받는 자에게만 제공 (별도 명령시 제출)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주의 자의적 판단으로 MSDS 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MSDS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제출 <input type="checkbox"/> 영업비밀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전 승인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MSDS 제도개선 ('20.12월)</p>	<p>산업안전보건법 ('21.1.16) 고용노동부 화학사고 예방과 (044-202-7757)</p>
<p>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예술인: 지원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근로자: 10인 미만 사업, 월 보수 215만원 미만자 지원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○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, 월보수 220만원 미만 예술인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% 지원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정보공개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 <input type="checkbox"/> 근로자: 10인 미만 사업 월보수 220만원 미만자 지원 *가입 이력이 있는 근로자 (기가입자) 지원 중단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정보공개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</p>	<p>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(고용노동부 고시) ('21.1.1)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기획과 (044-202-7350)</p>
<p>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(지원대상)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 <input type="checkbox"/> (지원수준) 해당 노동자 1명당 5인 미만 사업체 월 11만원, 5인 이상 사업체 월 9만원 *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비례 지원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(지원 대상)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 <input type="checkbox"/> (지원수준) 해당 노동자 1명당 5인 미만 사업체 월 7만원, 5인 이상 사업체 월 5만원 *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비례 지원 ☞ (참고)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사업소개(지원 대상·요건 등)</p>	<p>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운영규정 ('21.1.1)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추진단 (044-202-7783)</p>

<p>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</p>	<p>□ 신설</p>	<p>□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신설 ○ (자격)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적용 제외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% 미만 ○ (대상) 6,300명 ○ (지원) 월 5만원 ○ (방식) 교통바우처 방식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정책자료>대상자별 정책>장애인</p>	<p>-</p> <p>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과 (044-202-7484)</p>
<p>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</p>	<p>□ 사업주가 자체 교육을 할 경우 강사에 대한 자격 기준 없음</p>	<p>□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강사가 실시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</p>	<p>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및 동법 시행령 (‘21.1.1)</p> <p>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044-202-7487)</p>
<p>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인센티브 확대</p>	<p>□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처음으로 부여 시 사업주에게 1호 인센티브(월 10만원) 추가 지급</p>	<p>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처음으로 부여한 근로자부터 세 번째 부여한 근로자까지 사업주에게 추가로 월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 ○ 육아휴직 2,3호 인센티브 신설 ○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-3호 인센티브 신설 ☞ (참고) 고용보험홈페이지>사업주지원금 안내>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</p>	<p>고용창출 장려금·고용 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(고용노동부 고시) (‘21.1.1)</p> <p>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 (044-202-7480)</p>
<p>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운영비 지원요건 완화</p>	<p>□ 해당 직장어린이집 보육 아동 중 사업장 피보험자의 자녀 비율로 우선 지원대상기업 여부 및 인건비·운영비 지원 비율 판단</p>	<p>□ 피보험자의 ‘자녀’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호자로서 보호하고 있는 영유아를 포함하여 지원 ○ 피보험자의 손자녀 등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영유아를 포함시킴 ☞ (참고) 고용노동부홈페이지>보도자료>「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등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</p>	<p>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 59조 (‘21.1.1.)</p> <p>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 (044-202-7480)</p>

<p>최저임금액 인상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2020년 최저임금: 시간급 8,590원(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1,795,310원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최저임금 산입범위: 상여금 20%, 복리후생비 5% 초과 금액(월환산액 기준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2021년 최저임금: 시간급 8,720원(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1,822,480원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최저임금 산입범위: 상여금 15%, 복리후생비 3% 초과 금액(월환산액 기준)</p> <p>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정보공개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</p>	<p>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('21.1.1)</p> <p>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 (044-202-7970)</p>
<p>“자녀양육비” 용자종목 신설 및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대상 확대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용자종목(총8종): 의료비, 혼례비, 장례비, 부모요양비, 자녀학자금, 임금감소생계비, 소액생계비, 임금체불생계비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저소득노동자,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용자종목(총9종): 의료비, 혼례비, 장례비, 부모요양비, 자녀학자금, 임금감소생계비, 소액생계비, 임금체불생계비, 자녀양육비</p> <p>☞ (참고) 근로복지넷 누리집 (http://www.workdream.net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저소득 노동자,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</p> <p>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(참고) 남녀고용평등법, 근로복지기본법,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</p>	<p>근로복지 사업운영규정 (고용노동부 고시) ('21.1월 중)</p> <p>근로복지 기본법 ('20.12.8)</p> <p>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복지과 (044-202-7561)</p>
<p>대표이사의 안전·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·승인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신설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대표이사의 의무 신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표이사는 회사의 안전·보건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함 ○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시공능력 평가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인 주식회사가 대상 <p>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공포</p>	<p>산업안전보건법 ('21.1.1)</p> <p>고용노동부 산재예방 정책과 (044-202-7507)</p>
<p>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 산재보험 적용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사유제한 없이 적용제외 신청 허용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 대해 산재보험 신규 적용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육아·질병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 적용</p> <p>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정보공개>법령정보>입법예고>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</p>	<p>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('21.7.1)</p> <p>고용노동부 산재보상 정책과 (044-202-7712)</p>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·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시행</p>	<p>□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51종의 규정량을 규정 (산안법 시행령 별표 10)</p>	<p>□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51종의 규정량을 위험도에 따라 조정</p> <p>* 상향(완화) 18종: 포스핀, 삼불화 붕소, 염소 트리플루오르화, 일산화질소, 붕소 트리염화물, 브롬화수소,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, 메틸 이소시아네이트,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, 실란 (Silane),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, 이황화탄소, 염화 티오날,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, 과산화수소(중량 52% 이상), 불산, 질산, 암모니아수</p> <p>* 하향(강화) 18종: 포스겐, 시안화수소, 불소, 염소, 염화수소(무수 염산), 삼산화황, 암모니아, 이산화황, 브롬,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, 염화벤질, 디클로로실란, 산화에틸렌, 수소, 아크릴로니트릴, 클로로술폰산, 삼염화인, 발연황산</p> <p>□ 부식성 액체에 대한 농도 기준 및 배관을 통해 공급받는 연료용 도시가스의 규정량도 일부 조정</p> <p>* 농도조정: 불산, 황산, 염산, 암모니아수</p> <p>* 사업장 외부로 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저압으로 사용되는 연료용 도시가스(1일 5,000 Kg → 1일 50,000 Kg)</p> <p>☞ (참고) 고용노동부홈페이지>>정보공개>법령정보>입법예고>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</p>	<p>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(5인 이상 '21.1.16 / 5인 미만 '21.7.16)</p> <p>고용노동부 화학사고 예방과 (044-202-7754)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 신청기간 확대</p>	<p>□ 실업중인 산재노동자의 직업재활급여 신청은 장해판정일부터 1년</p>	<p>□ 실업중인 산재노동자의 직업재활급여 신청은 장해판정일 부터 3년</p> <p>-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일 이후 장해판정 받은 사람부터 적용</p> <p>☞ (참고) 고용노동부홈페이지>>정보공개>법령정보>입법예고>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</p>	<p>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('21.2.1)</p> <p>고용노동부 산재보상 정책과 (044-202-7709)</p>

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주 단위로 고용유지 조치 실시 <input type="checkbox"/>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고용유지지원제도 개선	<input type="checkbox"/> 파견·용역 사업주는 사업장 단위로 고용유지조치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 <input type="checkbox"/> 파견·용역 사업주는 사용사업주 또는 원청업체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휴업규모율, 신규채용, 감원방지는 사용사업주 또는 원청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피보험자에 한해 적용	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('21.1.1.)	
	<input type="checkbox"/> (원칙)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제출 (예외) <input type="checkbox"/> ①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 <input type="checkbox"/> ②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지역의 경우 20일 이내	<input type="checkbox"/> (원칙)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제출 (예외) <input type="checkbox"/> ① 국가 및 자치단체의 명령으로 휴업하는 경우 30일 이내 <input type="checkbox"/> ②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30일 이내 <input type="checkbox"/> ③ 기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전년동기, 전년 월평균, 직전 3개월 대비 매출액 15% 이상 감소	<input type="checkbox"/> 전년동기, 전년 월평균, 직전3개월 대비 또는 <input type="checkbox"/> ◦ 19년 월평균 또는 19년 같은달 매출액 대비 15% 이상 감소 (21년)		고용노동부 고용정책 총괄과 (044-202-7204)
	<input type="checkbox"/> 6~4개월 전 3개월 간 월평균 근로시간 대비 20% 초과 단축	<input type="checkbox"/> 소정근로시간 대비 20% 초과 단축 * 단, 연장근로가 반복·정형화된 경우 직전 3개월 월평균 근로시간 대비 20% 초과단축 허용		
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	<input type="checkbox"/> • 피보험자의 ▲ 10명 이상 (99명 이하) ▲ 10% 이상 (100명~999명) ▲ 100명 이상 (1,000명 이상) <input type="checkbox"/>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고용유지지원제도 개선	• 피보험자의 ▲ 10명 이상 (99명 이하) ▲ 10% 이상 (100명~999명) ▲ 100명 이상 (1,000명 이상) - 단, 고용위기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(180일) 소진한 1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에 대하여 무급휴직 허용('22년 까지)	고용보험법 시행령 ('21.1.1.)	
	<input type="checkbox"/> 3개월 이상 유급휴업(근로시간 20% 초과단축) 실시	<input type="checkbox"/> ① 3개월 이상 유급휴업(근로시간 20% 초과단축) 실시 <input type="checkbox"/> ② 3개월 이상 피보험자의 20% 이상 유급휴직 실시		고용노동부 고용정책 총괄과 (044-202-7204)